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해양수산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해양오염 방제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해양환경공단의 방제능력 확충 및 유지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매 3년마다 재산정토록 되어 있는 방제분담금 부과금액을 조정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“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“ 부과 요율 조정 (안 제54조 제1항 관련 별표 9)

구분		부과 금액		부과 기준·방법
		현행	변경	
유조선	내항선	4.77원	5.48원	선박총톤수기준 1톤당 /매 1회 입항할 때마다
	외항선	14.32원	16.46원	
유조선 외 선박	내항선	2.48원	2.82원	
	외항선	7.45원	8.47원	
기름저장시설	-	8.66원	9.85원	유류 수령량 100ℓ마다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별첨

대통령령 제 호

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9 제2호가목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구분		부과 기준	부과 금액	부과 방법
유조선	내항선	선박총톤수기준 1 톤당	5.48원	매 1회 입항할 때마다
	외항선		16.46원	
유조선 외의	내항선		2.82원	
선박	외항선		8.47원	

별표 9 제2호나목2) 중 “8.66원”을 “9.85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방제분담금 조정에 관한 적용례) 별표9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부과하는 방제분담금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				개정안						
[별표 9]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(제54조제1항 관련)					[별표 9] (좌동)						
1. (생략)					1. (좌동)						
2. 부과기준					2. 부과기준						
가. 선박					가. 선박						
구분		부과 기준	부과 금 액	부과 방법	구분		부과 기준	부과 금 액	부과 방법		
유조선	내항선	선박충돈	<u>4.77원</u>	매 1회 입항할 때마다	(좌동)	(좌동)	(좌동)	<u>5.48원</u>	(좌동)		
	외항선		<u>14.32원</u>			(좌동)		<u>16.46원</u>			
유조선	내항선	수기준 1 톤당	<u>2.48원</u>	(좌동)	(좌동)	(좌동)		<u>2.82원</u>			
외의 선박	외항선		<u>7.45원</u>		(좌동)	<u>8.47원</u>					
나. 기름저장시설					나. 기름저장시설						
1) 경유의 경우: 유류 수령량 100 ℓ 마 다 2.76원					1) (좌동)						
2) 경유 외의 유류의 경우: 유류 수령량 100 ℓ 마다 <u>8.66원</u>					2) 경유 외의 유류의 경우: 유류 수령량 100 ℓ 마다 <u>9.85원</u>						
3. (생략)					3. (좌동)						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0 - 5283